

# 문경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

제정 2016. 03. 29.

개정 2020. 07. 30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설치근거)** 문경시체육회(이하 “시체육회”라 한다)는 문경시체육회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36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이 규정은 시체육회, 문경시종목단체(이하 “시종목단체”라 한다) 및 그 단체에 속한 개인에게 적용한다. 또한 시체육회, 시종목단체에 속한 개인이 사임(사직), 임기만료, 미등록,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게 되더라도, 소속당시 행한 비위의 징계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정관 제36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시체육회의 및 시종목단체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
3. 체육관련 표창에 관한 사항
4.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
5.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6. 시체육회, 시종목단체 및 그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
7. 시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심의

##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
2. 부위원장 1인

3.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36조 제2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 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정관 제36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과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 위원 위촉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일 기준 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민선 초대 위원의 임기는 정관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른다.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(사임포함)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

**제8조(회의소집)**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**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,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의2(회의운영)**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고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고 사전 심의할 수 있다

② 회의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자, 안건·토의내용, 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 한다.

**제10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1조(제척 및 회피)** ① 위원장이나 위원(부위원장은 포함한다)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1. 징계 혐의자가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)인 경우
2.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
3.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4.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(부위원장은 포함한다)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 또는 위원(부위원장은 포함한다)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

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,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.

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**제11조의2(의무사항)** 위원회의 위원,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약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, 유포할 수 없다
2.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3장 법제 및 포상

**제12조(심의대상)**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시체육회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
2. 시종목단체 및 읍·면·동체육회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
3.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3조(포상대상)** 포상은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(전국체전, 소년체전) 우수성적 달성을, 체육 보급·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(기관)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.

**제14조(종류)**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·도 포상과 시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.

② 정부포상은 「상훈법」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.

**제15조(자체표창의 구분)** ① 시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, 특별상으로 나눈다.

② 정기표창으로 문경최고체육상 표창은 매년 대의원총회 개최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로부문
2. 감사부문
3. 모범경기단체상

4. 최우수선수상
5. 지도자상
6. 경기상

③ 문경체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국내·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지역체육을 선양한 자에게 임시 표창이나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④ 전문체육, 생활체육, 학교체육, 장애인체육 등 문경체육 발전이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체육상 수상자에게 패(상장)와 상금 또는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. 다만, 상금과 부상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16조(절차)** ① 정부·도 포상은 시체육회의 장 및 시종목단체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. 다만, 정부·도 및 경북 체육회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.

② 시 체육상은 시체육회의 장, 시종목단체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확정한다.

## 제4장 임원심의

**제17조(심의대상)** 위원회는 정관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1. 읍면동체육회, 시종목단체 임원 후보자
2. 읍면동체육회, 시종목단체 임원 후보자 재심의

**제18조(심의절차)** ① 임원의 임기는 4년, 감사는 2년으로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 민선 초대 임원의 임기는 정관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른다.

②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읍면동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에서 임원심의 요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임원심의(재심의) 신청서
2. 이력서(사진첨부) 및 개인정보공개동의서
3. 그 밖의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

④ 위원회는 임원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심의결과)**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에서는 즉시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징계

**제20조(증거우선의 원칙)**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조사 및 징계대상)** ① 누구든지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
1. 단체 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, 직권 남용,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
2. 부정 참가, 승부조작, 편파 판정,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
3. 폭력 및 성폭력
4.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건

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

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아니 할 수 있다.

④ 징계협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(사직),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**제22조(징계종류)** ①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, 징계를 받는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.

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.

가. 중징계 : 출전정지, 자격정지, 제명

나. 경징계 : 견책

③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.

가. 중징계 : 직무정지, 자격정지, 해임, 제명

나. 경징계 : 견책, 감봉

④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.

가. 중징계 : 심판정지, 자격정지, 강등, 제명

나. 경징계 : 견책

⑤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.

가. 중징계 : 직무정지, 자격정지, 해임, 제명

나. 경징계 : 견책

**제23조(출석요구)** ① 위원회가 징계협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협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협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협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협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징계협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협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협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

다.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협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징계협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징계협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징계협의자가 해외 체류,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, 여행,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⑥ 징계협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징계협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4조(심문과 진술권)** ① 위원회는 징계협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징계협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협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징계협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5조(징계의 정도 결정)**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징계협의자의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.

1.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(金品授受) 비위 및 횡령·배임
2. 폭력·성폭력
3. 승부조작, 편파판정

③ 징계의 시효는 위원회가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제2항의 경우는 5년)이 지나면 심의·의결하지 못한다. 다만, 해당 신고·접수일부터 심의·의결 전일 까지 기간은 제외한다.

**제26조(징계의 감경)**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
2.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
3. 대한체육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.

1.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(金品授受) 비위 및 횡령·배임
2. 폭력, 성폭력
3. 승부조작, 편파판정

③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에서 감경, 해제 할 수 없다.

**제27조(징계의 통보)**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, 즉시 이를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의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재심의 요구)** ① 징계혐의자는 위원회의 징계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재심의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재심의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하거나 경북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.

**제29조(징계의 효력 등)**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의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징계부과금)**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의 귀책사항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징계부과금을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징계부과금 부과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부과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, 부과금액이 판결금액 보다 많을 경우 감경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의거 징계부과금 결정·통보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⑤ 본 조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북체육회 해당 규정에 따른다.

**제31조(징계의 보고)** 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시체육회는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북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행정처리)** 회원 종목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·지도자·동호인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33조(비밀누설금지)**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34조(회의의 비공개)**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부 칙**<2016. 3. 29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문경시체육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<2020. 7. 30 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【별지 제1호 서식】**


**【별지 제2호 서식】**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정 계 협 의 자 인 적 사 항	① 소 속	② 직 위 (급)	③ 성 명
④ 의 결 주 문			
⑤ 이 유			
	년	월	일
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인</span>			

의결주문 정계 종류 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
	소속		직위(직급)	
	주소			
의결주문				
이유				
	년	월	일	
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인)</span>				

\*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

### 【별지 제5호 서식】

인적 사항	① 성명	② 소속
		③ 직위(급)
④ 주소	(연락처 : )	
⑤ 출석이유		
⑥ 출석일시		
⑦ 회의장소		
유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</li> <li>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</li> <li>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li>4.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li> </ol>	

.....(절취선).....

인적 사항	① 성명		② 소속	
			③ 직위(급)	
	④ 주소			

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

	년	월	일

성명 ①

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